

한국기업경영학회 제2차 콜로키움 발표자료

2019년 5월 30일(금) 17:00-18:00

서울시타워 21층(서울역)

# 인권경영에 대한 이해

발표자: 안건형 교수  
(대전대학교 국제통상학과)

# [ 목 차 ]

---

I. 서론

II. 인권경영의 의의

III. 국가인권위원회 <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>의 주요내용

IV. 결론 및 제언

---



|  
서론

# 1. 서론



기업의 인권경영 이슈가 국내에 부각된 것은 최근의 일이나 기업의 인권침해 규제는 오래 전부터 법률로서 금지하여 왔으며, 최근 국내에서도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

국내에서 “갑질”의 시초라 할 수 있는 **“2013년 남양유업 대리점 갑질 사건”**에 소비자들의 대대적인 불매운동에 나섰고 남양유업은 175억 원의 영업손실을 입어 매출이 10% 감소한 바 있음

최근에는 대한항공 사주 일가의 **“땅콩회항 사건”**과 **“물컵 갑질”** 사건 등으로 악화된 실적과 여론으로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대표직 박탈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음



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8월 <공공기관 인권 경영 매뉴얼>을 988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배포하면서 각 기관별로 인권경영 이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평가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30개 정부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, 860개 공공기관들이 이를 수용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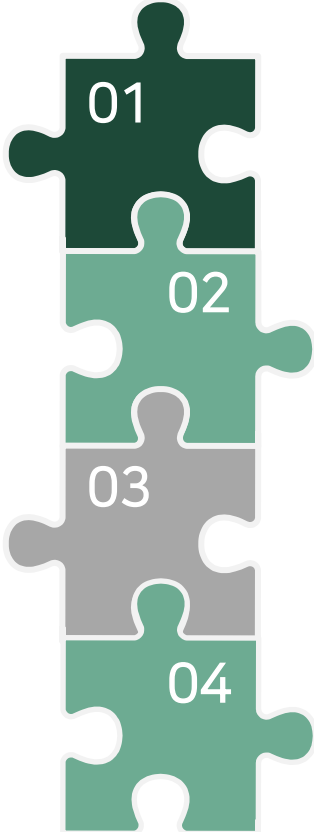
나아가,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에 <인권경영 평가 지표>의 신설을 권고하였으며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는 2020년 경영평가 편람에 이를 반영, 행정안전부는 2019년 "인권경영 평가지표" 신설, 2020년 이후 단계적 배점 확대 계획

현대사회에서 인권경영의 도입은 성공적인 경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인이며,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효율적인 인권경영 체제 도입을 위한 실무적 제언을 하고자 함



# 인권경영의 의의

### 1. 선행 연구 검토



**유남영(2018,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하여)**

인권기본법 제정을 통한 기업의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참여를 강화해야 함을 주장

**김병준(2013, 기업의 인권보고지표를 통한 인권경영의 강화)**

인권경영을 위해서는 **고충처리(Grievance Mechanism)** 제도의 항목을 포함한 한국형 인권보고지표의 설계가 필요함을 주장

**김인재(2014,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에 관한 국제기준과 법적 과제)**

CSR 접근법은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려우므로 **기업인권적 접근법**에 따라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의 정비가 필요함을 주장

**곽관훈(2015, 인권경영의 법적 의미와 기업규제패러다임의 전환)**

인권경영과 기업규제 패러다임이 **주주중심주의적 사고방식**에서 **이해관계자중심 사고방식**, **의사결정시스템**에 대한 규제, **정보공시를 통한 시장중심 규제**로 전환되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**인권경영이 기업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중요함**을 주장

### 1. 선행 연구 검토



04 이상수 · 이승협 · 김성률 · 김민철(2015, 중소기업의 인권경영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)  
중소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현행 법규의 개선, 인권경영에 대한 외부 압력 증대,  
중소기업의 인권 경영을 위한 내부역량 증대를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함을 주장

05 손선화 · 엄영호 · 장용석(2018, 한국 기업의 인권경영 도입에 관한 탐색적 연구)  
실증분석을 통해 기업의 인권경영 시행요인과 조직 외부의 제도적 환경으로부터의  
압박은 조직 인권경영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주장

06 국가인권위원회(2014,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)  
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으며, 일반원칙으로서 기업 활동으로 인한  
부정적 영향뿐 아니라 자회사, 이해관계자, 소비자 등도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을 것을  
요구하고 국제 인권법 및 각종 인권규범 준중 요구

### 2. 인권경영의 의의

국가의  
인권 보호  
의무

국가의 정책 및  
법령을 통한  
인권침해 방지

기업의  
인권 존중  
책임

기업의 인권침해  
방지 및 완화대책,  
인권존중 책임 실현

구제에  
대한 접근

국가와 기업의  
입법적, 행정적,  
사법적 구제수단 제공

결국,  
**인권경영의 정의**는

“

국가의 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,  
국가 및 기업의 실효적 구제에 대한 접근을 실천하는 경영

”

## II. 인권경영의 의의

### 2. 인권경영의 의의

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

**'국내연락사무소 (NCP)'**의 고충처리 제도는

인권경영에서의 가장 중요한 구제수단

전 세계 총 48개국이 OECD 가이드라인에 가입되어  
있으며 관련 이해관계자는 누구나 NCP에 이의제기 가능

**국가와 기업의**  
입법적, 행정적,  
사법적 구제수단 제공

“국가의 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준중 책임,  
국가 및 기업의 실효적 구제에 대한 접근을 실천하는 경영”

### 3. 소결

- (1) 2000년대 초반부터 해외에서 시작된 기업과 인권에 대한 논의는 UN, ILO, OECD, ISO, GRI 등에서 제정되고 활용되기 시작한 기업인권 관련 국제 규범과 문서를 통해 전 세계로 급속히 전파되고 호응을 얻기 시작했다.
- (2) 선행연구들의 검토 결과, (1) 대한민국은 인권경영 도입과 시행을 위해 국가가 주도하여 인권경영 평가지표를 개발·시행하고, (2) 이를 우선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도입하면서 차후 사기업들에게까지 전파되도록 하여 (3) 궁극적으로 선진적인 미래 인권국가로 발돋움하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, 이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 생각된다.
- (3) 결국, 국가인권위원회의 <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>과 국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평가에 인권경영 지표를 신설하고 이를 적용하여 평가하겠다는 정책이 이러한 접근방식을 실현하려는 첫걸음으로 볼 수 있다.



국가인권위원회 <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>의 주요 내용

#### 인권경영매뉴얼에 따른 추진 절차

<p><b>인권경영 체계 구축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i. 인권경영 추진 시스템 구축</li><li>ii. 인권경영 선언문 작성 및 공표</li><li>iii. 기관 내 각 부서 확산</li><li>iv. 기관(기업)의 영향권 내의 협력사에 확산</li></ul>	<p><b>인권 영향평가(Due Diligence) 실시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i. 기관 운영 인권 영향평가</li><li>ii. 주요사업 인권 영향평가</li></ul>
<p><b>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i. 인권경영(사업) 실행</li><li>ii. 인권경영 전 과정 공개</li></ul>	<p><b>구제절차 제공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i. 구제절차 연구와 준비</li><li>ii. 구제절차 수립</li><li>i. 구제절차 시행</li><li>ii. 구제절차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</li></ul>

## 1. 인권경영 체계 구축

### 인권경영 추진 시스템 구축

#### I. 인권경영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

#### II. 인권경영 실행 지침(규정) 제정

- ▶ 인권경영 실행 목적, 인권경영 체계,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, 인권영향평가, 인권실태조사, 이행사항, 구제절차 등

#### III. 인권경영위원회 구성



- ▶ 인권경영 정책 실행의 의사결정기구
- ▶ 임직원, 인권전문가, 공급망, 지역주민, 노동조합 등

#### IV. 인권교육과 훈련 실시



- ▶ 기관(기업) 내 정기적인 인권교육 실시
- ▶ CEO, 임원, 인권경영 담당자 대상 전문 훈련

### Ⅲ. 국가인권위원회 <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>의 주요 내용

#### 1. 인권경영 체계 구축

##### <인권경영 매뉴얼 시범 적용 공공기관>

	인권경영회 규모	인권경영위원회 구성		
		내부위원	외부위원	비고
국민연금공단	위원장 1인 포함 8인	공단 상임이사 노조추천 이사 등	인권전문가, 협력사 관계자 등	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으로 선출 인권경영 담당부장이 사무간사
한국가스공사	위원장 1인 포함 7인	사장 상임 감사위원 등	인권전문가 3인	위원장은 공사 사장 노조추천 인사 無
부산항만공사	위원장 1인 포함 7인 이내	경영부사장, 기획조정실장	노조 추천인사 선원복지센터 추천인사 등	위원장은 경영부사장 노조추천 인사는 외부인사로 분류
전남개발공사	위원장 포함 11인	경영본부장 사업본부장 등	인권전문가 3인 협력업체 1인 등	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으로 선출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이 사무간사
천안시시설관리공단	위원장 포함 8인	본부장 혁신감사부장 등	반부패전문가 장애인전문가 등	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공단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

#### 1. 인권경영 체계 구축

##### 인권경영 선언문 작성 및 구축



최고경영진을 포함한  
임·직원 대상 실시



설문조사 또는 면담조사 실시  
(경영활동 관련 임·직원,  
이해관계자 대상)



인권경영 선언문 작성 및  
최고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공표

### Ⅲ. 국가인권위원회 <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>의 주요 내용

#### 1. 인권경영 체계 구축

“ 인권경영 선언문을 인쇄물로 작성하거나  
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확산 ”



인권경영 선언문



확산

기업 내 부서

관련 협력사

#### 2. 인권 영향평가(Due Diligence) 실시

“ 사업 관계의 결과 또는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 
실제적·잠재적 인권 리스트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 ”

기관(기업) 인권영향평가

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

#### 2. 인권 영향평가 (Due Diligence) 실시

##### 기관(기업) 인권영향평가

###### 의의

각 기관 **경영활동**  
전반을 대상으로 한  
인권 영향평가

###### 체크리스트

**10**개 분야  
**155**개 지표

###### 평가대상

인권경영 체제,  
노동권,  
환경권 등  
기업경영 전반

##### <체크리스트>

1.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, 2. 고용상의 비차별, 3.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, 4. 강제노동의 금지, 5. 아동노동의 금지,
6. 산업안전 보장, 7.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, 8. 현지주민의 인권보호, 9. 환경권 보장, 10. 소비자인권 보호

#### 2. 인권 영향평가 (Due Diligence) 실시

#####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

###### 의의

각 기관 **주요사업**  
전반을 대상으로 한  
인권 영향평가

###### 체크리스트

기관별  
자체 개발

###### 평가대상

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 
인권에 영향을 주는  
주요사업

평가지표  
선정

인권경영위원회  
관련 외부 전문가

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로

**신뢰성**  
**공정성** 확보가 중요  
**객관성**

## 2. 인권 영향평가 (Due Diligence) 실시

###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추진절차

(1)

####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수립

- 평가 사업 선정
- 선정 사업의 이유, 목적, 평가의 원칙 및 주체, 평가기간, 소요예산 등
- 수립된 평가계획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승인

(2)

####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 마련

- 선정 사업의 실제·잠재적 인권리스크 분석
-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에 포함될 지표 선정
-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작성

(3)

####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 교육

- 사업 추진부서의 체크리스트에 대한 충분한 이해
- 온·오프라인을 통한 체크리스트 교육
- 사업 추진부서는 평가지표의 증빙자료 제출을 위한 실무교육 필요

## 2. 인권 영향평가 (Due Diligence) 실시

###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추진절차

(4)

#### 인권경영위원회 평가 자료 제출

- 평가지표에 대한 답변을 위해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자료 확보
- 각 부서의 평가 자료를 취합하여 인권경영위원회에 제출
- 비공개 자료의 경우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방안 필요

(5)

#### 인권경영위원회 평가 및 결과보고서 제출

- 인권경영위원회는 취합된 자료를 체크리스트에 따라 평가
- 관련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변호사, 회계사 등의 전문가 의견 수렴
- 해당 시, 전년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처리, 이행실적 및 성과 등 병행 평가

(6)

#### 최고경영진 보고 및 공개

- 인권경영위원회는 평가결과를 담당 부서에 제출
- 평가결과에는 이해관계자 의견, 실제·잠재적 인권 위험 방지조치 포함
- 최고경영진은 인권침해 방지 조치를 수립 시행하며, 모니터링 실시
- 기관 홈페이지, 언론 등을 통해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공개

#### 3.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

“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파악된 인권현황, 인권침해 방지·완화 조치를 경영 및 사업에 반영하고 이해관계자 및 일반 대중에게 공개 ”

인권경영  
(사업)  
실행

인권현황과 인권침해 방지 및 완화조치를  
경영에 반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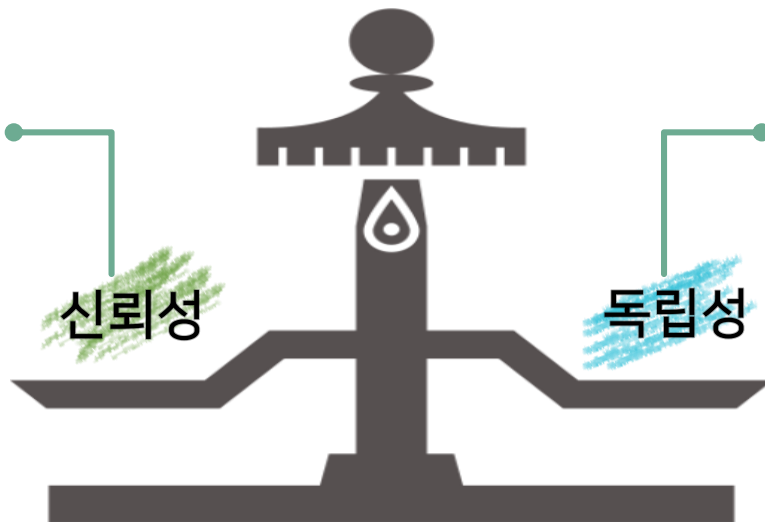
인권경영  
전과정  
공개

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개선의지 표명으로  
인권경영의 홍보와 책임성 증대

#### 4. 구제절차 제공

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침해 당한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, 조사하여 분쟁을 적절히 해결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원상회복 ”

- 구제절차 결과 통지
- 평가 및 개선책 강구



- 다양한 외부위원 참여
- 의사결정 독립성

#### 4. 구제절차 제공

##### 구제절차 연구와 준비

- 유사한 성격의 기관 고충처리 절차 벤치마킹
- 파악된 인권 위험과 잠재적 인권 침해를 구제절차에 반영
- 구제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 확보 방안 마련
- CEO는 구제 여부를 검토하여 신속한 구제조치 실행

##### 구제절차 수립

- 관련 기관규정, 조직개편 등을 통한 제도화
- 합의체 기구 '인권침해구제 위원회', '인권 옴부즈맨' 도입
- 기관 외부의 구제절차 형식 등 구제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수립
- 구제절차 홍보

##### 구제절차 시행

- 구제 매뉴얼·가이드라인에 따른 진정 접수
- 진정인의 익명성 보장을 통한 신뢰성 제고
- 구제 매뉴얼·가이드라인에 따른 구제 시행
- '인권침해 여부 판단 위원회' 구성 시 노조와 인권단체 포함

##### 구제절차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

-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정기적 평가를 통한 구제절차 개선
- 기관 구성원들 대상 설문
- 진정인 대상 평가의견 반영
- 2-3년마다 절차의 외부평가
-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평가에 근거한 제도 및 절차 개선

### Ⅲ. 국가인권위원회 <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>의 주요 내용

#### 4. 구제절차 제공

국민연금공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고충처리제도, 레드휠슬, 성희롱고충상담관 제도 등에서 온·오프라인 신고채널 마련</li> <li>▪ '인권경영 지침'에서는 개괄적으로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세부 지침을 제정하는 방식 채택</li> </ul>
한국가스공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'인권경영규정'에 따라 인권상담센터를 운영</li> <li>▪ 인권침해사건 관련 심의를 담당하는 '진정심의위원회'를 별도로 운영</li> </ul>
부산항만공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'인권경영 이행지침'에 따라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이 사건을 조사하며, 인권경영위원회의 장이나 사장의 승인을 얻어 보강 조사 및 위원회 회부하도록 규정</li> <li>▪ 인권경영위원회의 수나 구성의 구체성에 있어 다소 미비한 측면이 있음</li> </ul>
전남개발공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'인권경영규정 제정규정안'에서 주관부서를 관할하는 본부장 또는 실장을 "인권경영책임관"으로 지정</li> <li>▪ 인권경영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자료수집,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'조사소위원회'를 구성해 보강조사 가능</li> </ul>
천안시시설관리공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'인권경영 운영규정'은 전남개발공사의 '인권경영규정 제정규정안'을 일부 차용한 것으로 추측됨</li> <li>▪ 차용 과정에서 시행하기 불편하거나 복잡한 규정들을 누락시켜 인권경영 체제 구축 및 시행의 취지에 다소 부합하지 않음</li> </ul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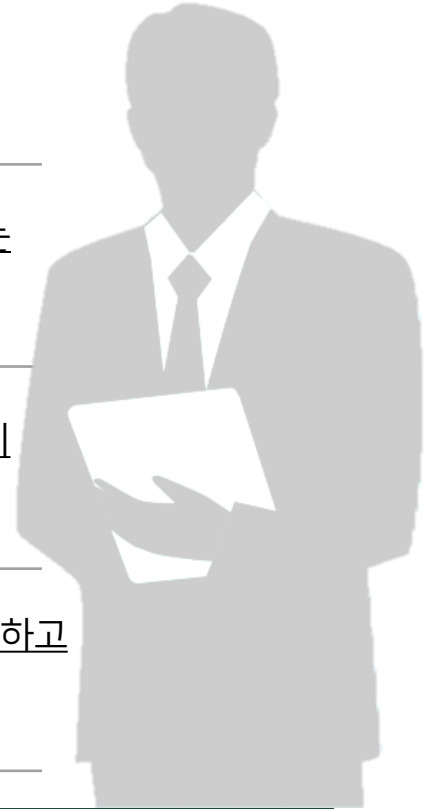
# IV

결론 및 제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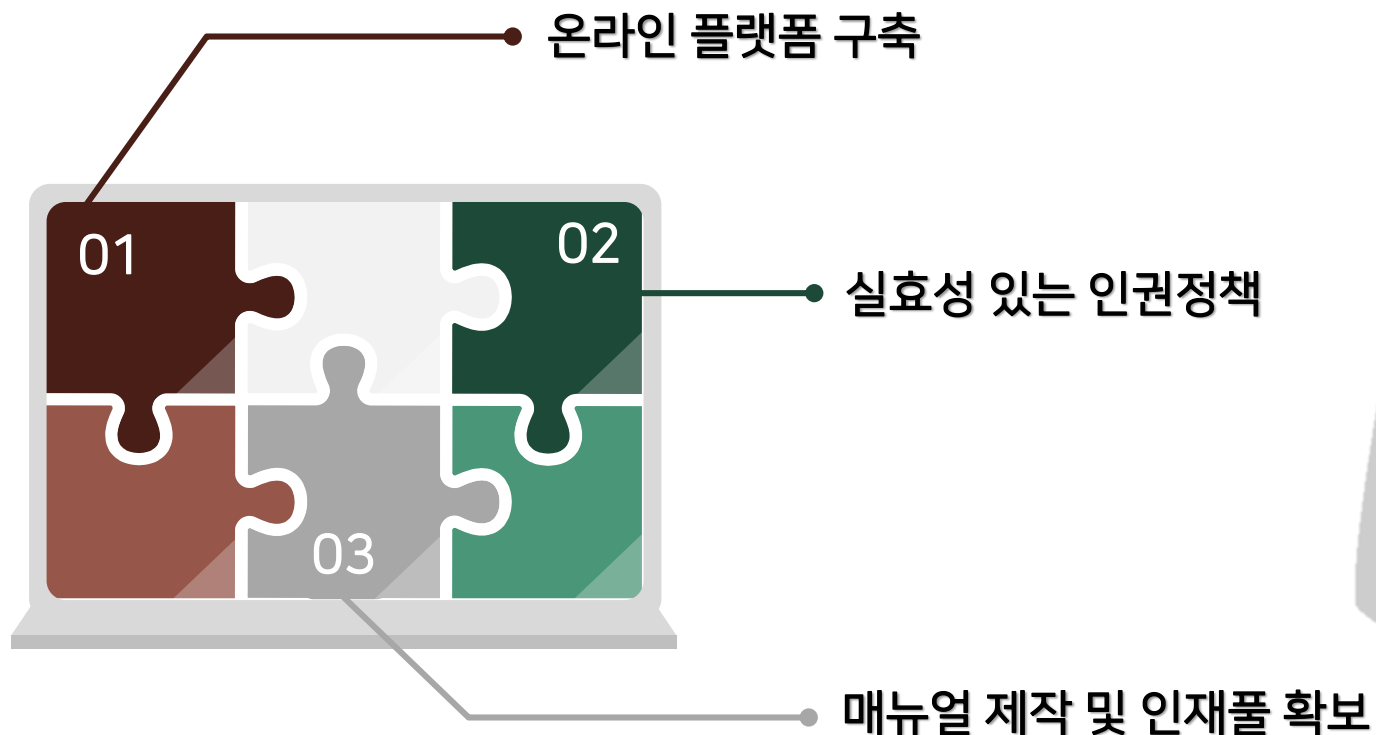
### 1. 결론

---

-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<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>을 배포하였고, 나아가 공공기관 및 공기업 경영평가에 “인권경영 평가지표” 신설 권고
  - 이에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는 2020년 경영평가 편람에 반영, 행정안전부는 2019년 “인권경영 평가지표” 신설, 2020년 이후 단계적 배점 확대 계획
  -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각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겠다는 취지가 내포
  -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자율적인 인권경영 수행으로 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인권 리스크를 사업에 반영해 인권국가로의 도약을 도모하려는 취지
- 



## 2. 제언



## 2. 제언

01

### ● 온라인 플랫폼 구축

각 기관의 인권경영 담당 실무자들은 인권경영에 관한 정보와 교육에 목말라 있다. 따라서 인권경영에 관한 **정보, 통계 자료 및 사례연구, 학술 서적 및 논문** 등을 작성,수집하여 공개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.

## 2. 제언

• 온라인 플랫폼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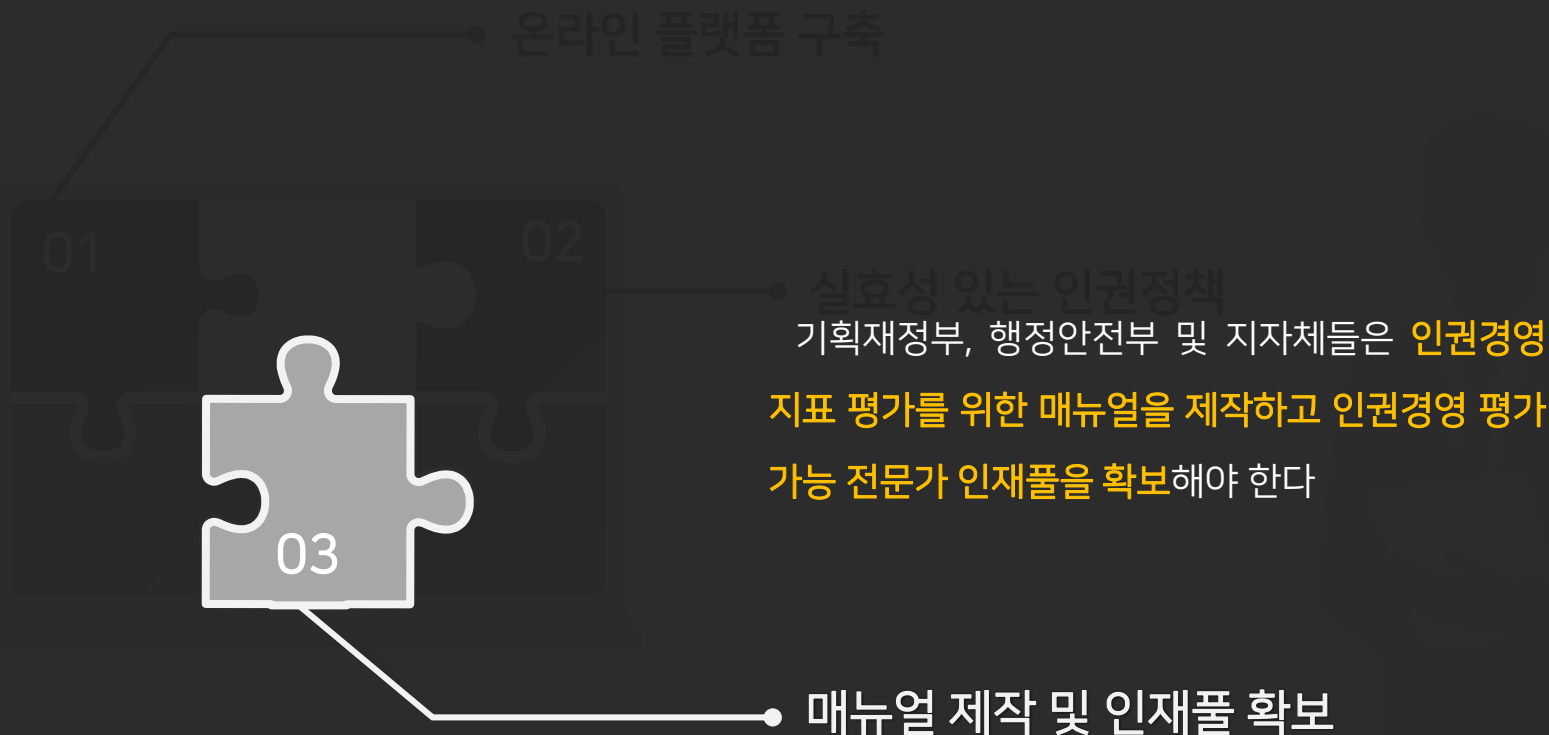
01

02

### • 실효성 있는 인권 정책

인권경영과 유사한 개념과 정책으로 우리 기업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인권정책 시행을 위해 정부는 <2018~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(NAP)>을 공표하였다. 따라서 정부는 **인권경영 정책과 NAP를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유사 정책들을 통합한 NAP 시행**을 고려해 볼 수 있다.

## 2. 제언



## 참고문헌

---

- 박관훈. (2015). 인권경영의 법적 의미와 기업규제패러다임의 전환. **기업법연구**, 29(1), 205-228.
- 국가인권위원회. (2014). **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**. 서울: 국가인권위원회.
- 국가인권위원회. (2018). **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**. 서울: 국가인권위원회.
- 국가인권위원회. (2019). 기업과 인권 향후 업무 추진 방향. **국가인권위원회 2019년 인권경영포럼 발표자료**. 2019. 3. 28-29,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, 159-166.
- 김병준. (2013). 기업의 인권보고지표를 통한 인권경영의 강화: ISO 26000와 GRI G4의 인권지표를 중심으로. **아주법학**, 7(1), 37-69.
- 김인재. (2014).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에 관한 국제기준과 법적 과제. **저스티스**, 140, 5-45.
- 손선화, 엄영호, 장용석. (2018). 한국 기업의 인권경영 도입에 관한 탐색적 연구. **지방정부연구**, 22(2), 477-499.
- 신은실. (2019). 대기업 총수 물러나게 한 스투어드십코드...주주행동 본격화되나. **연합인포맥스**, 2019. 4. 1.자 기사, *available at* <http://news.einfomax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023447> (2019. 4. 1. 최종접속).
- 안건형. (2017).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 국내연락사무소(NCP)의 분쟁해결 기능과 지배구조 개선방안. **중재연구**, 27(4), 179-198.
- 안건형, 박상희. (2018). **기업책임경영(Responsible Business Conduct)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**. 서울: 삼영사.
- 안건형. (2018).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운송·물류산업에 주는 시사점. **인천항만공사 공식블로그**, *available at* <https://incheonport.tistory.com/4126> (2019. 4. 8. 최종접속).
- 유남영. (2012).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하여. **저스티스**, 129, 59-78.
- 이상수·이승협·김성률·김민철. (2015). 중소기업의 인권경영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. **서강법률논총**, 4(1), 43-151.
- 이상철. (2019). 인권경영 정책 국내·외 동향. **국가인권위원회 2019년 인권경영포럼 발표자료**. 2019. 3. 28-29,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, 5-20.
-

## 참고문헌

---

- 전남개발공사. (2019). **2018년도 지방공기업 혁신성과 평가보고서**. 무안군: 전남개발공사, 1-74.
- 황희석. (2019). 인권경영 추진 국내·외 동향. **국가인권위원회 2019년 인권경영포럼 발표자료**. 2019. 3. 28-29,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, 23-28.
- 성시호. (2018).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에 유남영·최영애·한상희 추천. **연합뉴스**, 2018. 7. 19.자 신문기사 *available at* <https://news.v.daum.net/v/20180709103707034> (2019. 4. 5. 최종접속).
- 전남개발공사. (2019). **2018년도 지방공기업 혁신성과 평가보고서**. 무안군: 전남개발공사, 1-74.
- 황희석. (2019). 인권경영 추진 국내·외 동향. **국가인권위원회 2019년 인권경영포럼 발표자료**. 2019. 3. 28-29,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, 23-28.
- 성시호. (2018).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에 유남영·최영애·한상희 추천. **연합뉴스**, 2018. 7. 19.자 신문기사 *available at* <https://news.v.daum.net/v/20180709103707034> (2019. 4. 5. 최종접속).
- Financial Reporting Council, *available at* <https://www.frc.org.uk/> (2019. 4. 1. 최종접속).
- Nieuwenkamp, R. (2016), "CSR is dead! What's next?", *available at* <http://oecdinsights.org/2016/01/22/2016-csr-is-dead-whats-next/> (2019. 4. 5. 최종접속)/.
- Nieuwenkamp, R. (2018), "40 Years Guidelines and National Contact Points: A Beautiful Glass, But Only Half Full...", in Bonucci, N. and Kessedjian, C. (Eds), *40 Years of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*. Paris: Editions A. Pedone, 35-41.
- OECD. (2011). *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*, Paris: OECD Publishing, 1-89.
- Townsend, M. (2015), "CSR is dead. What comes next?", **GreenBiz**, *available at* <https://www.greenbiz.com/article/csr-dead-now-what> (2019. 4. 5. 최종접속).
- UN. (2011). *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*. New York: UN.
-

# THANK YOU!!!



Prof. AHN, Keon-Hyung

Daejeon University, Daejeon, Korea

([khahn@dju.kr](mailto:khahn@dju.kr) / [copy7318@nate.com](mailto:copy7318@nate.com))